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1. 1.

(주) 뽀뿌커뮤니케이션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5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('20년 12월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(주) 뽀뽀커뮤니케이션
대표자	고재성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뽀뽀(www.ppomppu.co.kr) / 약 80만명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100억 미만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최현식 상무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○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(2018 ~)

-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, 저작권 위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게시중단 요청은 회원/비회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게시중단 요청안내

게시중단 요청하기

게시중단(임시조치) 요청 안내

게시중단 요청이란?

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, 저작권 위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게시중단 요청은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에 따라 진행됩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44조의2 (정보의 삭제요청 등)
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·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제44조의3 (임시의 임시조치)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
유의사항

1. 등록된 게시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2. 뽀뽀는 증빙서류 및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게시중단 조치하며,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'게시중단 결과'를 안내합니다. '게시중단 결과' 전달 시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게시자에게 전달됩니다.
3. 게시중단 후 30일 이내 게시자로부터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영구 삭제됩니다. 게시자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, 30일 이내 재게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재게시 요청 시, 요청자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며, 게시물은 게재됩니다.
4. 재게시 된 게시물에 대해 반복하여 게시중단 요청하실 수 없으며, 공격기관(방송통신심의위원회)을 통해 심의요청 후 결과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(게시중단 요청 안내 페이지)

○ 운영참여게시판 운영(2006 ~)

- 운영참여게시판은 회원들의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창구이며 신고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
운영참여게시판입니다.

운영참여게시판 신고/문의글 처리과정은 [접수확인 ▶ 논의(신고 제외) ▶ 해결 또는 가부결정 ▶ 답변/완료 코멘트] 입니다.
논의 시간과 해결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, 피드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(본인이 작성한 문의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
관련메뉴 **FAQ** | 정책 게시판 | 레벨강등문의게시판 | 게시중단 요청

전체 | 기타 | 장애 | 개선 | 문의 | 신고 | 청소년문의

번호 | 분류 | 글쓴이 | 제목 | 등록일 | 추천

-내글보기 -새로고침

운영참여게시판 공지사항

❗ 게시글, 코멘트 신고는 [신고]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세요!

분란 유발 등 이용 규칙 위반 신고는 해당 게시글과 코멘트 내 위치한 [신고] 버튼으로 접수해 주세요.
- 뽀뿌 이용 규칙 : <http://www.ppomppu.co.kr/zboard/view.php?id=faq&no=30>

[신고]기능을 통해 접수될 경우 신고 임계치가 높아져 좀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개인간 장터 거래로 인한 사기, 그외 개선/장애/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글 작성 시 상세한 내용을 남겨주세요.
감사합니다.

1일간 띄우지 않기

(운영참여게시판)

○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

- 뽀뿌는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연령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소년 접근 불가 게시판은 미성년자가 접근 불가합니다.

! 알립니다

성인포럼은 만 19세 이상(생년월일 기준)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?

로그인 페이지로 이동

(미성년자 접근 제한 페이지 접근 시 안내 문구)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○ 20.01.01 ~ 12.31.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 없음

불법촬영물 등 신고·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															
※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[별지서식]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															
※ 대상기간 : '20.12.10. ~ 12.31.(신고접수 기준)															
□ '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· 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															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
신고 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 기관·단체													
		소계	-	-	-	-	-	-	-	-	-	-	-	-	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	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													
	해당없음													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		
		해당없음													
	각하 등														
	소계		-	-	-	-	-	-	-	-	-	-	-	-	-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
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		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	

※ 요청사유 및 삭제·차단 사유는 중복계상

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○ 뽐뿌 서비스 이용약관 중

<p>제12조 (공개게시물의 삭제)</p> <p>1.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,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,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-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-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-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-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- 종교적,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,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<p>2.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로 근거로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</p>
--

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(예: 고소, 가처분신청, 손해배상청구소송)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(예: 검찰의 기소, 법원의 가처분결정, 손해배상판결)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○ 게시중단 관련 안내 내용 문구 중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4조의2 (정보의 삭제요청 등)

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·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
제44조의3 (임의의 임시조치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
○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

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게시중단 서비스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해당 게시글에 대해 게시중단 처리를 한다. 단, 확인/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한다.

②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 경고 문구 등 게시중단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한다.

③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

○ 기타 운영관련 사항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최 현 식	박 흥 용
부 서		커뮤니케이션팀
직 책	상 무	대 리
지정일	2020. 12. 17	2020. 12. 17.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- 2020년 교육 진행 사항 없음
- 2021년 관련 교육 진행 예정

교육예정일	교육명	참여인원	비고
2021년	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필수 교육	최현식 상무, 박흥용 대리	필수 교육 안내 시 참여 예정
21년 상반기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박흥용 외 4명 (커뮤니케이션팀)	필수 교육 이후 교육 내용 전파